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21.03.02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 설치된 가설경사로는 최소폭이 90cm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고, 외력에 견디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(가설경사로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현장 설치(반입)전에 사전검사를 하고 승인된 분전반을 사용하기 바람, 분전반 단자함의 충전부는 커버를 설치하고, 관리책임자(정/부)를 지정 표기하고 잠금장치를 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 설치된 유류보관소는 외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, 안전수칙이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 보관소)

